

『개념과 소통』 발간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은 전문 학술지 『개념과 소통』을 발간하여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이론적 기초를 더하고자 합니다. 개념은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체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개념의 충돌은 공동체 형성에 중대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래의 국제정치구조를 가장 고민해야 하는 한반도 지역에서 개념의 소통 문제를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국 인문학의 역사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한림과학원에서 2007년에 ‘동아시아 기본개념의 상호소통’이라는 아젠다를 내걸고 인문한국사업에 참여한 것도 위와 같은 소명의식에서였습니다. 동아시아 3국의 역사는 지난 두 세기 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왔을 뿐 아니라, 탈냉전(脫冷戰)의 시대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혼돈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미국이라는 세계국가, 새로운 지역국가로서의 유럽연합을 비롯한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중세질서에 기초한 행위자들 또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은 여전히 서유럽의 유형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정신구조가 매우 이질적이어서 자기들이 속한 동북아 지역을 인식하는 태도에도 서로 적대적인 부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 국가의 틀을 고집하지 말고 지역국가, 동북아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동북아 정치구조의 분열성을 극복하는 것은 정치·경제의 접근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정신세계의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념의 소통을 향한 탐구는 그 과제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 학자들처럼 개념의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분석, 의미론이나 명 의론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의 각각의 언어체계를 감싸고 있는 문화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교환·변용과정에 유의하여 근대적 개념 형성과정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의 각 집단들의 인식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통 가능한 동아시아 공동체 정립에 직접 기여하여야 합니다.

학술지 『개념과 소통』은 학문분과의 벽을 넘어 다양한 관점과 소재를 바탕으로 개념들의 변천과 소통 양상을 다루며, 동시에 그 토대가 되는 철학적 고찰과 개념분석 연구방법론의 개발을 중심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동아시아 근대 논의의 새로운 담론 지형을 형성하고, 세계를 향하여 인문학의 미래지향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장 김용구

한림과학원 규정

제정 1989.12.23 최종 2007. 11.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에 의하여 부속기관으로 설치한 한림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설치목적) 과학원은 학계의 저명한 원로교수와 전문연구자로 구성되는 종합학술연구기관으로서 각 학문영역을 선도하는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과학원은 한림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사업) 과학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사업
2. 연구서적 및 간행물 발간
3. 학술회의 개최
4.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자와의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5.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와 관련된 강좌 개설 및 연구자 양성
6. 일송기념사업
7. 기타 과학원 설립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 (과학원장) ① 과학원에는 과학원장을 둔다.

- ② 과학원장은 특임교수, 석좌교수 또는 이 대학교의 정교수 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과학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과학원장은 과학원을 대표하며, 과학원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

제6조 (부원장) ① 과학원에는 부원장을 둔다.

- ② 부원장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과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③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부원장은 과학원장의 지시를 받아 과학원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7조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 ① 과학원에는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를 둔다.

- ② 특임교수, 석좌교수는 운영위원회 및 석좌교수회의 심의와 과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명예석좌교수는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며,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의 처우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④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특임교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종사하여 국내외 학계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발표하고 계속해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명망을 갖춘 자

2. 석좌교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종사하여 국내외 학계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발표하여 관련 학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는 자

3. 명예석좌교수

석좌교수로 재직한 자

제8조 (석좌교수회) ① 과학원에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좌교수회를 둔다.

- ② 석좌교수회는 과학원 석좌교수와 명예석좌교수로 구성된다.
- ③ 석좌교수회에는 회장을 두며, 회장은 석좌교수와 명예석좌교수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① 과학원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일반연구원, 연구교수, HK교수, HK연구교수로 구분한다.

- ② 일반연구원은 특정 학문 연구를 위해 교내외 명망 있는 연구자를 위촉한다.
- ③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특정 학문 연구 및 개인 연구에 종사한다.
- ④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한림과학원 인문학지원사업 연구원 임용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및 조교) 과학원에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이사장, 총장, 과학원장, 석좌교수회장, 이사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이 대학교 정교수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부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되며, 간사를 겸한다.

제12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과학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연구위원회) ① 과학원의 연구사업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과학원장 및 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되며, 연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15조 (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원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
2. 인문한국지원사업 등 기타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회의)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 (재정) 과학원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교비
2.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3. 기부금
4. 기타 보조금

제18조 (회계연도) 과학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9조 (예산 및 결산) 과학원의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세칙) 기타 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림과학원 학술지 발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림과학원(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인문한국사업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개념과 소통』의 발행 목적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 및 투고 논문 심사, 출판 등 발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는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제3조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한림과학원 인문한국지원사업 운영내규 제2조에 따라 학술지 편집장이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조 (발행 횟수 및 시기) 발행 횟수는 1년에 두 번,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투고논문은 매 발간일 1개월 15일 전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제5조 (학회지의 구성)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 발행 취지 말미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루는 논문, 토론, 연구번역, 서평 및 서평논문, 학술(연구)동향 등으로 구성한다. 논문, 연구번역, 서평논문은 심사 대상이 된다.

- (1) 논문: 근대 동아시아의 상호소통을 보여 주는 주요 개념들 및 개념분석 방법론, 소통과 담론의 철학적 이론들을 다루는 창의적인 논문
- (2) 연구번역: 동아시아 근대에 출판된 주요 원전의 전체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한 번역과 논문 형식의 해제

- (3) 토론: 위 주제들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이나 논변
- (4) 서평 및 서평논문: 위 주제들과 관련하여 고전적 저술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간행된 서적에 대한 짧은 서평 및 논문 형식의 분석적 해설
- (5) 특집: 본 연구소가 특정한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경우 그 발표 논문들을 특집으로 구성할 수 있다.
- (6) 학술(연구)동향: 위 분야의 최근 국내 또는 해외 연구동향 소개 및 비판

제6조 (투고 관련 사항)

- (1) 투고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서 개념과 소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행한 국내의 연구자로 투고 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 (3) 투고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투고 규정에서 정한다.

『개념과 소통』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개념과 소통』에 투고된 논문 및 기타 심사 대상이 되는 글의 게재를 결정하는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 (심사 절차)

- (1) 투고된 논문은 논문이 담긴 파일을 전송파일의 형태로 편집위원회에 접수한 후 심사 과정을 밟는다.
- (2)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심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한다.
- (3) 본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투고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
- (4)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주제와 전공이 일치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6) 심사자는 아래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후심사’,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종합 판정한다.
 - 1) 학문적 기여도: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주제와 논거, 관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가. 현재의 시대적, 학문적 상황에 비추어 철학적 논의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가 등.
 - 2) 구성의 완성도: 논문의 주제가 글 전체를 통해 선명히 부각되고 있는가, 논지가 짜임새 있게 정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등.
 - 3) 논증의 적절성: 사실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논문이 내건 목표나 주장, 논제에 부합하는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등.

- 4) 자료의 활용도: 주제와 관련된 핵심 문헌을 충실히 이해하고 검토하고 있는가. 해당 주제에 대한 국내의 핵심 연구 성과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글 전체가 원전이나 2차 문헌을 잡다하게 인용하고 요약하는 데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등.

제 3조 (게재 결정)

- (1) 심사위원 3인 모두의 판정이 ‘게재가’일 때, 당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이 ‘게재가’이고 1인의 판정이 ‘수정후심사’일 때, 수정된 원고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약식심사에 따라 다음 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3) 심사위원 1인의 판정이 ‘게재가’이고 2인의 판정이 ‘수정후심사’일 때, 다음 호에 또 다른 심사위원 2인의 재심을 받도록 한다.
 - ① 재심 결과 심사위원 2인 모두의 판정이 ‘게재가’일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심 결과 심사위원 1인의 판정이 ‘게재가’이고 1인의 판정이 ‘수정후게재’이거나 ‘수정후심사’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약식 심사에 따라 다음 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 결과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이 ‘수정후게재’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약식심사에 따라 다음 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4)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이 ‘게재가’이고 1인의 판정이 ‘게재불가’일 때, 다음 호에 게재를 결정하기 위해 또 다른 심사위원 1인의 재심을 받는다.
 - ① 재심 결과 추가 심사위원의 판정이 ‘게재가’일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심 결과 추가 심사위원의 판정이 ‘수정후심사’일 경우, 수정 사항이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약식 심사에 따라 다음 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위에 열거된 판정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 (6)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은 당해 또는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고가 초과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순연될 수 있다.

제4조 (게재 절차) ‘게재가’ 판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지침을 따

라서 수정보완한 최종본의 파일을 편집위원회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해야 한다.

제5조 (저작권) 투고자의 논문은 게재와 동시에 논문의 저작권이 『개념과 소통』 편집위원회에 이양된다.

제6조 (기록 보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관한 디지털 자료 일체를 보관해야 한다.

『개념과 소통』 투고 규정

『개념과 소통』에 투고할 논문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투고 논문의 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2. 논문 요약문: 다음 양식의 논문 요약문을 작성하여 논문에 첨부한다.
 - 1) 논문 제목
 - 2) 논문 분야(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서양사상, 중국사상, 한국 근대문학, 일본 근대문학, 정치학, 사회학 등 분야와 지역을 포함하여 세 가지 정도 표기한다)
 - 3) 원고지 4매 내외의 국문 초록
 - 4) 원고지 3매 내외의 영문 초록(Abstract)
 - 5) 4개 이상의 주제어(Key Words)를 표기

▶ 국문 초록은 다음의 양식을 따라 작성한다.

제목:

- 논문분야 한국사, 한국사상, 정치학
- 주제어 이기론, 퇴계, 율곡
- 요약문 내용쓰기

▶ 영문 초록은 표 없이 다음의 순서를 따라 작성한다.

영문 제목

영문 주제어

영문 초록

3. 투고자 사항(별지 기록): 모든 투고자는 1) 투고 논문의 한글 및 영문 제목, 2) 투고자의 한글 및 영문 성명, 3) 정확한 소속, 4) 우편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심사용 논문 요약문과 본문에는 필자의 이름과 소속을 표기하지 않는다. 하나의 파일 안에 논문 요약문, 논문, 투고자 사항을 순서대로 작성한다.
4. 논문 접수처: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편집위원회 황수영 앞
전화: 033-248-2905
e-mail: de2902@hallym.ac.kr(한림과학원)

【투고 논문 작성지침】

1. 제목, 목차

- 1) 목차에 장, 절, 항, 목을 표시한다. 머리말과 맺음말도 목차에 표시한다.
2) 장, 절, 항, 목 등의 단계별 표시는 다음과 같다.
☞ 1. 1), (2) ②

2. 본문

- 1) 한국어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논문은 원문 그대로 실을 수 있다.
2) 투고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 2002버전 이상)로 작성하되, 한글의 스타일 기능(F6)을 사용하여, 바탕글은 좌우여백 0, 들여쓰기 2, 글자크기는 10, 글자체는 '바탕'을 선택한다. 독립된 인용문의 경우는 인용문스타일을 이용하고 글자크기 9, 좌우여백은 4로 하며, 위아래 한 줄을 비워 둔다.

- 3) 인용문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4) 한자 및 영문 등의 단어표기는 다음과 같다.
☞ 역사(歷史) / 충돌(clash) / 전이(轉移, transfer)
5) 한자, 영문 등은 한 단락 내에서 처음에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6)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을 병기할 때도 ‘()’를 사용한다.
☞ ‘태양력의 전용(專用太陽曆) / ‘국가 사이의 법(droit entre les nations)’
7) 본문 내의 외국문헌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제국 그 사이의 한국 Korea Between Empires』
8) 외국인명은 가급적 원음에 가까운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그러나 중국인명의 경우 아편전쟁 이전은 한글음역, 이후는 원음으로 표기한다.
☞ 공자(孔子), 량치차오(梁啓詔)
9) 외국서명은 한글번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어로 표기한다.
☞ 『이재원론(理財原論)』

3. 각주

- 1) 각주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각주를 사용할 수 있다.
2) 각주에는 한자, 영문 등을 노출시킬 수 있다.
3) 출전이 복수일 경우 ‘;’를 사용한다.
4) 출전의 출판지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을 생략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참고문헌에서 언급한다.
5) 자신의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도 자신을 노출하는 줄거나 줄고라는 표현을 피하고 이름만 명기한다.
6) 각주의 출전 표시는 사례별로 다음과 같다.
• 동양어권 논문 · 단행본
☞ 홍길동, 1998, 「의적의 개념」, 『의적연구』 10집, 100~101쪽.
홍길동, 1998, 『의적연구』, 활빈출판사, 131쪽.

홍길동, 1998, *앞의 논문(또는 앞의 책)*, 100쪽.

鎌田正, 1963, 『左傳の成立と其の展開』, 東京: 大修館書店.

• 사료, 영인본

☞ 『英祖實錄』 권10, 영조 2년 7월 19일 기유, “……” (영인본 37책 16쪽 가)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서울대학교 규장각,奎10220)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81.

• 서양어권 논문, 단행본

☞ Aleksandrowicz, Charles H.(1961), “Treaty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European and South Asian Powers in th 17th and 18th Centuries,” *Recueil des Cours*, pp.207~320.

Boyle, R.(1667), *The Origins of Forms and Qual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역사

☞ 앙드레 슈미드(2002),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래 역, 휴머니스트, 250쪽 (Schmid, Andre,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15-1919*, Columbia University Press).

4. 표, 그림

- 1) 그림이나 표는 워드프로세서로 직접 작성한다.
- 2) 표는 제목을 위에 표시하고, 보충설명이 있으면 밑에 표시한다.

☞ <표 1> 통리기무아문의 개편과 책임 인물

--	--	--	--

출전

비고

- 3) 그림은 제목을 아래에 표시한다.

5. 참고문헌

논문 말미에 첨부하되 각주에서 설명한 방식을 따르며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을 중심으로 명기한다. 기본자료, 단행본, 논문 순으로 명기하며 각각의 경우 한글 문헌, 동양어권 문헌, 구미어 문헌, 기타언어 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개념과 소통』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림과학원의 학술지 『개념과 소통』에 논문 게재시 다음의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는 논문발표나 학술지 게재시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 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전반적 과정에 관련된다.
- ②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비공개 자료를 통해서 얻은 내용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③ 연구자는 자신이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이미 게재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연구자는 공개된 업적이든 미공개 업적이든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된다.
- ⑤ 공동 논문의 경우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연구책임자의 직책만 가지고 실제적 기여 없이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⑥ 논문의 수정과 관련하여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⑦ 연구자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히 읽고 평가해야 하며, 논문의 게재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는 충분한 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논문 내용을 경시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 ⑤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⑥ 편집위원은 투고나 심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완벽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원장이 맡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술지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② 학술지와 관련된 심사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 투고를 최소 5년 이상 금지한다.

제8조 (연구윤리 서약)

한림과학원의 학술지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투고자는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연구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념과 소통 2009년 12월 31일 | 제4호

인 쇄 일 | 2009년 12월 23일

발 행 일 | 2009년 12월 31일

발 행 처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omepage: www.has.hallym.ac.kr

발 행 인 | 김용구

편 집 장 | 박근갑

제 작 처 | 도서출판 소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97

전화: 02-2677-5890 팩스: 02-2636-6393

Homepage: www.sowha.com
